

협력사 등록 및 운용 가이드라인

1. 목적

◦ 이 가이드라인은 협력사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당사의 협력사 등록 및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가이드라인의 구성

- (1) 협력사의 신규등록 관련사항
- (2) 공급자와의 거래취소 관련사항

3. 용어의 정의

- (1) 협력사: 당사의 생산라인을 연결하기 위하여 외주가공 및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말하며 모듈화 업체도 포함한다.
- (2) 공급자: 당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당사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완성품 및 반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2,3차 협력사를 말한다.
- (3) 최초평가: 협력업체 등록을 위하여 통합구매부서장의 발의하에 당사 거래적정 가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- (4) 사후평가: 당사에 등록된 업체 중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협력업체에 대해 품질 보증체제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월간 및 몇 년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4.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, 절차 및 결과의 공개

- (1)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며 당사에 운영하는 대원강업 홈페이지에 상시게시한다.
- (2)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당사에서 대원강업 홈페이지에 변경후 15일 이내에 수정 등재한다.
- (3) 협력사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.

5. 협력사의 신규등록 업무절차

5.1. 등록신청

- (1) 통합구매부서장은 고객이 특정 공급자의 원재료 사용을 지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고객 지정업체를 신규 공급자로 추천한다.
- (2) 통합구매부서장은 당사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신규업체 발생시 업체등록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접수받아 서류를 심사 후 공급자 품질보증체제심사표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질보증부서/연구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가. 공급자 등록 신청서

나. 품질시스템 인증서 사본

다. 공급자 실태조사서(거래선카드, 생산설비 보유실태)

라. 사업자 등록증 사본

단, 거래금액이 월 100만원 이하 업체인 경우는 상기 등록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, 양산 이전 단계에서의 신규업체선정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

5.2. 업체평가

- (1) 신규업체에 대한 선정은 통합구매부서에서 실시하며 선정된 업체에 대한 개발업무는 연구소에서 실시한다. 단, 통합구매부서에서 최초평가를 발의한다.
- (2) 통합구매부서와 품질보증부서/연구소는 평가위원의 구성,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 및 공급자에게 평가내용 평가일정을 1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(3) 평가결과 A, B급 업체는 거래하며, C급 업체는 거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수급사항을 감안하여 사장의 승인이 있을 때 공급자로 승인할 수 있다.
- (4) 최초평가는 공급자 평가기준서에 의거 공급자를 평가한다.

5.3 공급자 등록

- (1) 최초평가가 완료된 신규공급자는 품질보증부서장의 승인하에 거래에 필요한 계약을 통합구매부서장과체결하고 체결 후 업체등록 CODE를 부여받아 관리한다.
- (2) 생산지원부서장은 소모성 시장구매품 공급자 및 거래금액이 월 1000만원 이하 업체로 예상되면 최초 평가 절차없이 공급자로 등록할 수 있다.
- (3) 공급자는 인증기관에 의해 ISO9001:2000 인증을 필히 취득하여야하며 인증을 취득치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제외한다.
- (4) 등록된 공급자의 등록 내용 변경시 생산지원팀의 승인 후 등록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- (5) 2002년 8월 30일 이전의 기존 거래업체는 최초평가 없이 공급자로 등록된다.

6. 공급자거래 취소

- (1) 계약위반, 허위서류제출 등 거래중 고의적으로 당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공급자
- (2) 부도 및 기타사유로 더 이상 거래를 유지키 어렵다고 판단되는 공급자
- (3) 지속적인 품질문제로 인한 당사 제품 품질보증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된 자(심의위원회 결정)
- (4) SQ 평가 결과 C등급 업체는 6개월 이내 재평가를 실시하며 재평가 실시 후에도 등급상향이 안될 경우 6개월 이내 양산이관한다.
- (5) 협력사 거래취소는 생산지원팀에서 주관하고, 거래 취소 후 협력사 신규선정은 통합구매부서에서 산정한다.